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5
----------	-----

발의연월일 : 2011. 11. 16.

발의 의원 : 하용하 의원, 김기석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1. 개정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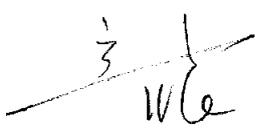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하 용 하	하용하	
김 기 석	김기석	